

2002년도충청북도  
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(안)

## 차 례

- I. 심사경과
- II. 제안설명
- III. 검토방향
- IV. 제안서류 및 서식
- V. 교육재정추이 및 2002년도 예산개요
- VI. 전문위원 검토보고
- VII. 심사결과
- VIII. 소수의견 요지(없음)

##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(안)

# 심 사 보 고 서

### 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1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8일
3. 상정일자(195회정례회)
  -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1.12.11)
    - 2002년도 예산(안)상정, 검토보고, 질의답변
  -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1.12.14)
    - 계수조정
  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의결

### II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)

### Ⅲ. 검토방향

-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은
-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예산이나
- 교육정책 및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고,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학교와 학생간의 이질감이 심화되고, 교원정년조정,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교육투자수요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여건은 더욱 더 악화될 전망이므로
- 지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편성 추이와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명하고
-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어 분석 검토 하였음.
  - 첫째, 관계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준수
  - 둘째, 경비부담의 적법성
  - 셋째, 사업설정의 합목적성
  - 넷째, 사업량(물량) 산정의 적정성
  - 다섯째, 편성단가의 현실성
  - 여섯째, 지출의 효율성
  - 일곱째,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여부

## IV. 제안서류 및 서식

### 1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(예산안의 첨부서류)

- 가. 예산편성 기본지침
- 나. 세입·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
- 다. 채무부담행위 설명서
- 라. 명시이월비 설명서
- 마.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
- 바.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·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추정 및 연차별상환계획에 관한 조서
- 사.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
- 아.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
- 자. 계속비 조서
- 차. 지방재정계획서
- 타.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
- 파.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

## 2.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지침(117쪽)

가. 예산총칙

나. 세입세출예산

- (1) 총괄표
- (2) 관별예산
- (3) 기관별 세출예산(별첨2호서식)
- (4) 세입·세출예산사항 설명서(별첨3호서식)
- (5)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(별첨4호서식)
- (6) 세출예산 조서(별첨5호서식)
- (7) 세입·세출예산 각목 명세서(별첨6호서식)

다. 계속비 조서(별첨7호서식)

라. 명시이월사업 조서(별첨8호서식)

마. 지방채 조서(별첨9호서식)

바. 채무부담행위 조서(별첨10호서식)

## 3. 검토의견

가.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예산안 제출시 제출할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는 미제출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

-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서(122쪽)로 시달한 서식에 의거 “경직성 경비, 사업예산, 채무상환, 예비비”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데
- 인건비, 경상사업, 시설사업, 채무상환, 예비비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

다. 예산총칙의 정의

-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총칙 제8조의 경우 기구·직제 변경시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예산 “이체” 만 가능함에도
- **법정과목인** 장·관·항의설치·개폐 또는 명칭변경과 예산의 이용(移用)을 추가하고
- **행정과목인** 세항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전용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예산총칙에 이를 명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
- 예산총칙 제9조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경 예산편성을 못할 경우 「**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**」고 규정한 것은
- 예산편성 및 심의요구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의회의 “의결을 간주처리한다”는 것은 모순일 뿐만아니라,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**예산총칙 제9조의 기재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** 사료됨

## V. 교육재정 추이 및 2002년도 예산개요

### 1.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

가. '9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.4%

나. '9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.1%가 증가 되었으나

다. IMF 한파로 인하여

'99년도에는 '98년도 대비 14.6%가 감소 되었으며

라. 2000년도에는 '99년도 대비 18.2%가 증액된 7천 527억 4,336만 3천원을 요구하였고

마.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7.9%가 증액된 8천 122억 2,394만 7천원을 요구 하였으며

바.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9.2%가 증액된 8천868억 9,905만4천원을 요구하였음.

### 2. 세입예산의 재원별 부담은

가. '96년도 국비지원액은 5,124억 5,752만 8천원으로  
국비부담율은 91.6%고 지방비는 8.4% 이었고

나. 2000년에는 국비 87% 지방비 부담 13% 이었으며

다. 2001년에는 국비 81% 지방비 부담은 19%로 계상하였고

라. 2002년에는 국비 83.1% 지방비부담은 16.9% 계상하였음

### 3.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세입예산

가. '9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.2%를 감액하였으며

나. 2000년도에는 114%가 증가한

850억 7,648만원을 계상, 그 중

지방채는 371억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



- 라.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54.9% 증가(534억 3,593만 2천원)한 1천 508억 2,14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
- 마.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0.6%감소(8억4,857만6천원)한 1천499억 7,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

4.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**인건비**는

- 가. '97년도에 4,695억 9,642만원
- 나. '98년도에 전년대비 4.9%,
- 다. '99년도에 전년대비 0.8%가 증액 되었으나
- 라. 2000년도에는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32.0%를 감액한 3,382억 6,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
- 마.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11.9% 증가한 3,785억 1,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
- 바.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4.7%증가한 3,880억 2,8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

5. **물건비**는

- 가. '97년도에 710억 8,082만 8천원
- 나. '98년도에는 전년대비 20.2% 증액
- 다. '99년도에는 전년대비 36%가 감액 되었으나
- 라.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73.5%가 증가한 949억 4,1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
- 마.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6.9% 증가한 1,109억 9,091만 4천원이고
- 바.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7.6%증가한 1,193억 6,7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음

## 6. 경상이전비는

- 가. '97년도에 482억 9,058만 8천 원
- 나. '98년도에 전년도 대비 9%가 증가 되었으나
- 다. '99년도에는 전년대비 78.3%가 감액 되었으며
- 라.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,713.0%가 증가된 2,084억 5,3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
- 마.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8.2%가 증가된 2,256억 1,586만 5천 원을 계상 요구 하였으며
- 바.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6.7%증가된 2,489억 1,4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음

## 7.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

- 가. '97년에 1,014억 2,423만 1천 원
- 나. '98년에는 전년대비 6.2%가 증액 되었고
- 다. '99년에는 전년대비 37.6%가 감액되었으며
- 라.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29.4%가 증액된 870억 8,1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
- 마.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5.0%가 감액된 740억 1,9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
- 바.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52.7% 증액된 1,111억 9,5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음

## 8. 물건비중 관서운영비는

- 가. '97년에 35억 8,111만원
- 나. '98년에는 전년대비 12.9%
- 다. '99년에는 전년대비 36.5%가 증액되고

- 라.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72.2%가 증액된 95억 1,3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
- 마.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25.8%가 증액된 119억 6,43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
- 바.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29.6%증액된 154억 6,348만원을 계상하였음

9. 그리고 사학지원비는

- 가. '97년도에 421억 5,875만 1천원
- 나. '98년도에 전년대비 8.3%,
- 다. '99년도에 전년대비 1.7%을 증액 계상하였고
- 라.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9.1%가 증액된 553억 4,9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
- 마.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7.6% 증액된 650억 9,08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
- 바.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21.2%증액된 789억 1,4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음

## VI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영 만)

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,868억 9,905만 4천 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8,122억 2,394만 7천 원보다 9.2%(746억 7,510만 7천 원이 증액)증가한 규모입니다

### 1. 세입예산

#### 가. 세입예산 개요

○ 세입예산은 재원별로

- 국가부담 수입이 83.1%인 7,369억 2,621만 8천 원
- 도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이 9.7%인 857억 3,794만 4천 원
-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7.0%인 622억 2,695만 6천 원
- 기타 지원금이 0.2%인 20억 793만6천 원입니다.

「표1」

#### 연도별 재원별 세입예산 구조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 재원별	'99		2000		2001		2002	
	예산액	구성비	예산액	구성비	예산액	구성비	예산액	구성비
합 계	636,620,456	100	752,743,363	100	812,223,947	100	886,899,054	100
국가부담수입	596,866,601	93.8	655,357,883	86.9	661,402,535	81.4	736,926,218	83.1
교육재정교부금	420,203,001	66.0	457,630,000	60.8	542,417,000	66.8	617,302,762	69.6
양 여 금	145,395,000	22.8	163,059,000	21.7	114,245,447	14.0	116,657,321	13.2
국고지원금	976,600	0.2	3,860,883	0.4	4,740,088	0.6	2,966,135	0.3
교육환경개선교부금	30,292,000	4.8	30,808,000	4.1	-	-	-	-
자치단체부담수입	156,951	-	4,269,380	0.6	84,076,629	10.4	85,737,944	9.7
자 체 수 입	39,596,902	6.2	93,116,098	12.5	66,744,783	8.2	62,226,956	7.0
주민부담및기타	2	-	2	-	0	-	2,007,936	0.2

## 나. 검토의견

### (1) 국고지원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, 지방교육양여금은 전년도보다 각각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44억 2,141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음

### (2) 법정전입금

2002년도 세입예산에 법정전입금으로서 도세전입금(66억 8천만원)과 지방교육세(787억 3천 7백만원)은 전액 계상되었음

### (3) 비법정전입금

-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(도서관)
-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전입금과
-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.

### (4) 재산임대수입

- 예산편성지침상 2001년도 결산예정액과 최근 3년간의 평균신장을 및 2002년도 특수요인을 감안 계상토록 되어있는바
- 대지료, 대가료, 임야수입의 감액계상배경과 기타 임대재산임대수입을 전년도보다 9,748만 6천원 증액 계상한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됨.

### (5) 재산매각수입
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음(매년 반복 지적된 사항)  
※ 노후컴퓨터등 기자재 대체비(253백만원 요구)

### (6)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

-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“시도별로 책정한 적정수준의 인상율과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감안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
- 입학금수입(전년대비 1억 1,572만 8천원 감소)과 수업료 수입(전년대비 51억 5,918만 2천원감소)을 감액 계상하였고
- 교육청 홈페이지상에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(2000.2.29개정)에 의하여 1급지(시지역의 경우)1인당 입학금 1만 1800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
### (7) 수수료 수입

- 시험검정사업비등 수익자부담원칙의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, 입학수험료 및 시험검정비 세출예산소요범위내에서 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되어있으나(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39쪽, 57쪽)
- 다음 「표2」에 나타나있듯 수지균형이 맞지않으므로 검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「표2」

## 2002년도 시험검정수수료 수지분석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수 입	지 출	
		금 액	내 역
○ 중입검정고시	무 료	2,140	· 업무추진비 640천원포함
○ 고입검정고시	20,000	48,020	· 급량비1,200, 수당6,300, 여비1,320, 업무추진비2,000
○ 고등학교입학시험	67,100	32,310	
○ 일반직공채시험	10,000	7,500 (교육전문직)	· 초등3,069, 중등 4,431
○ 유치원교사	7,500	초등교사임 용포함계상	
○ 초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시험	6,250	26,827	· 일반운영비8,400, 급량비460, 수당12,688, 여비4,290 업무추진비1,000
○ 중등교사임용 후보자 선정시험	38,000	88,145	· 일반운영비60,000, 급량비1,500, 수당11,310, 여비4,135, 업무추진비1,200
○ 특수학교교사임용 후보자선정시험	1,250	?	
계 8건	150,100	204,942	

**(8) 잡수입**

위약금(2억 8,604만 9천원)등 감액 계상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**2. 세출예산**

**가. 세출예산 개요**

○ 세출예산안의 구조별로는

- 급여 및 복지예산 62.1%인 5,512억 1,652만 5천원
- 학교교육비 32.7%인 2,902억 9,468만 1천원
- 교육행정비 2.3%인 199억 2,025만 3천원
- 문화및평생교육비 0.2%인 13억 4,009만 9천원
- 기타경비 2.7%인 241억 2,749만 6천원으로 계상요구한바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음.

**나. 검토의견**

**(1) 예산편성 운영관리의 일관성 문제**

- 2001년도 예산심의 요청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의 경우 “본청과 지역청” 으로 구분작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
-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후에는 “예산과목” 순으로 인쇄하여 제출하고 있으나
- 일부 예산과목의 경우 2001년도 세출예산조서와 2002년도 세출예산조서의 2001년도 기재란의 기재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요구됨



※ 학교회계 전출금

- 2001년도 예산조서 : 959억 3,191만 5천원
- 2002년도 사항설명서의 2001년도예산란  
: 958억 8,480만 6천원

(2) 예산의 재정운영

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(995쪽 및 996쪽)에 의한

- ① 세입예산 초과수납액(501억 9,429만원)
- ② 세출예산 불용액(220억 7,942만원)
- ③ 세출예산 이월액(659억 2,202만원)등은 총 1,381억  
9,573만원인바

2002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24억 2,965만원만 계상한 것은  
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” 는 지방재정법  
제29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 
필요함

(3) 2001년도 세출예산운영

- 2001년도 세출예산성립후 (498억 4,406만원)과  
이월액(659억 2,202만원)중 명시이월예정액
- 2001년도 급여·복지예산 불용예정액이 110억 6,496 만원  
임에도 2002년도에 40억 2,147만원을 증액한 것과 관련  
급여복지예산 과대계상으로 인한 연금 부담금 등 초과  
비용 발생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

#### (4) 지방채 상황

-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한 기채이자(70억 1,787만 8천원)와 기채보전분(86억 6,461만 2천원)은 도합 156억 8,249만원으로서
- 2002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4억 6,598만 8천원을 계상한바
- 교육인적자원부 내시액보다 2억 1,650만 2천원 과소 계상한 것은 시정이 요구됨.

#### (5) 성과급 예산

- 2002년도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으로 70억 9,891만원을 계상한바
- 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는 2001년도분에 대해서도 교원 단체의 수령거부 및 반납운동으로 문제점이 있는 교육계 현안이므로
- 그간 교원성과급 예산 집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
- 2002년도 성과급예산에 대하여는 교육계등 공무원 사회의 공감대가 정립될 때까지 예산계상에서 유보하거나 차라리 교원등 공무원보수규정에 반영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 평가방법을 개발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
## (6)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

- 사립학교 재정지원문제는 매년 예산 심의시 반복 지적된 사항이며
-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
  -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(입학금+수업료+법정전입금)과
  - 기준재정수요액(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와 학생 1인당 경비기준)을 산출
  - 지원기준을 마련 재정결함 지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
- 다음 「표3」 과 같이 '97년 이후 교육비 특별회계 총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8.7%이나 사학지원비 규모는 이 보다 4.1%가 높은 12.8%이고
- 2002년도 예산요구액중 2001년도
  - 공교육 인건비는 4.7%, 시설비는 23.2%를 증액 계상하였으나
  - 사학지원 인건비는 19.5%, 운영비는 3.8%를 시설비는 98.5%를 각각 증액 계상한바
- 사학지원 인건비도 공립학교 교원수준에서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교육 인건비보다 무려 14.8% 증액계상한 것은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

- 또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초과지출시에 초과금액을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내역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
-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수경비(18백만원) 및 원어민 강사수당(38백만원)지원과 예산은 사립학교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「표3」

## 전년도 대비 사학예산 증가율

(단위:%)

구 분	'97	'98	'99	2000	2001	2002	연평균	2001년대비 2002년요구
총예산	24.4	7.1	△14.6	18.2	7.9	9.2	8.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건비</li> <li>- 공교육7.4%증</li> <li>- 사학19.5%증</li> </ul>
사 학	8.7	8.3	1.7	19.1	17.6	21.2	12.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설비</li> <li>- 공교육23.2%증</li> <li>- 사학98.5%증</li> </ul>

## (7) 운영수당 계상의 문제점

(가)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편성지침

-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(99쪽)상 운영수당은
  - ① 위원회 참석수당 ② 일.숙직비 ③ 시험관리비 ④ 교육기관강사료, 자체강사료 등과 ⑤ 직원능력개발 지원비를 계상하고
- 위원회 참석수당은
  - ① 법령,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과
  - ② 법령, 조례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
- 시험관리비는

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되 단,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, 채점 및 문제선정, 감시, 문제편집,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.

(나) 문제점

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(8) 위원회 활동수당

- 위원회 수당은 일당으로 기본료 5만원을 계상하고 초과료로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2만원의 초과료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

-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
- 다음의 위원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단가보다 과소 계상한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- 특수교육 운영위원수당(3만원)
-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제작위원수당(2만원)
- 지역교육청의 각종위원회 위원수당(3만원)

#### (9) 행사관련 예산

-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위원에 대한 수당 계상이 가능할 것이며
- 충청북도교육·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 제2조의 위원【①시험②체육③도서간행편찬관련위원과④각종 전시회·경연대회 심사위원⑤법규및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】에 대한 수당액은
-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
- 행사관련 운영수당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
- 「표4」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의 편성단가 적용이 행사주관부서에 따라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행사관련 「위원회」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「표4」

## 행사관련경비(수당)단가 계상현황

(단위:만원)

구 분	출제	채점심사심판	감독	기 타
<b>1. 발표대회</b>				
가. 유아그리기,나의주장,아가모운동	-	3	-	
나. 교사현장연구대회 발표	-	4	-	
다.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	-	4	-	◦ 과정심사,수업현장심사 2종계상
<b>2. 학력경시대회</b>				
가. 국어	4.5	2	1.5	
나. 외국어	4.5	2	1.5	◦ 말하기평가심사수당 2만원 별도
다. 수학, 과학	4.5	3	1.5	
라. 초등수학, 과학	0.3 (문항)	3	1.5	◦ 문제선정심의수당 4만5천원별도
<b>3. 경진대회</b>				
가. 컴퓨터, 타자 경진	4.5	3	1.5	
나. 홈페이지 경진대회	4.5	3	1.5	◦ 심사수당과 채점수당 구분 2가지 계상
다. 사이버 사냥대회	-	3	-	
라. 학생과학발명품	-	3	-	◦ 지도교사논문심사 4만원 별도
마. 청소년 과학경진	-	3	-	
<b>4. 기타행사</b>				
가. 충북2002 직업교육축제	-	3	-	◦ 행사관리요원관리수당 1만원 별도
나. 충북영농학생전진대회	0.3 (문항)	학생3 교사4	-	◦ 평가항목 및 척도 구성수당 2만원 별도
다.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				
- 경시부분	4.5	3	1.5	
- 공무부분	-	3	-	
- 지도사례 발표부분	-	4	-	
라. 교육용S/W전람회 공모전	-	4	-	
마. 과학전람회	-	3	-	
바. 체육행사(3건)	-	2	-	◦ 교직원체육대회외2건

※ 지역교육청은 본정보다 수당단가가 낮게 계상되거나①심사수당만 계상하거나②출제수당은 객관식시험수당으로 하고 채점은 심사수당으로 ③출제없이 심사 또는 감독수당만 계상하는등 본청과 지역청간, 지역청 상호간에도 적용기준이 다름.

**(10) 교육과정개발 등**

-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맥락에서  
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 
위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이  
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예산계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
- 「표5」와 같이 사업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도 「적용단가」가  
다르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투자  
하는 것은 아닌지, 사업량 설정은 타당한지 설명이  
요구됨.

※ <예시> 교육용 S/W공모심사수당 계상

- 교육정보화과 : 전람회 예산에 계상
- 교육과학연구과 : S/W보급사업예산에 계상

**「표5」**

**교육과정개발등 운영수당 계상현황**

구 분	단 가	사 업 량	기 타
1. 유치원교육과정연구	5만원	2회×20명	• 편집수당별도
2. 제7차교육과정연구개발	5만원	90명	• 지역청:3만원
3. 제7차교육과정운영위원회	5만원	40명	
4. 수준별학습지도자료 개발	4만원	2명×10과목×2회	
5. 교과교육연구 활동심사	2만원	48×2회	
6. 수업연구계획서 심사	2만원	15명×15과목	
7. VOD자료 제작	3만원	20명×10회	
8. VOD자료 편집	9만원	200편	
9. 교육용S/W공모	4만원	5명×3일	
10. 교육용S/W개발보고서심사	4만원	5명×3일	
11. 특별연구교사제 연구계획	4만원	5명×3일	

※ 지역청의 교육자료개발수당 : 대부분 3만원 단가 적용



### (11) 시험관련예산

- 예산편성지침상 시험수당은 ①출제비(객관식 문제당3천원, 주관식과목당4만원)②채점비(객관식10문제당11원,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3만원)③문제선정 심의비(과목당 4만5천원)④문제편집 및 편찬비(일당 1만원)⑤시험 감독비(평일 1만5천원, 휴일3만원) ⑥면접.실기채점비(일당 5급4만원,6급이하2만원) ⑦감금수당(일당3만원)등 7종만 인정하고 있음에도
- 다음 「표6」 과 같이 7종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 예산 계상기준이 각각 다르고 면접 및 실기시험의 경우 채점비 이외의 수당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확대해석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
- 또한 교교입시관리 감독수당을 1인당 일당을 1만원으로 계상(사항설명서 97쪽)한 것은 예산편성단가 (평일1만5천원, 휴일3만원)보다 과소계상한 것으로 사료 되고
- 교육훈련기관의 평가고사중 교관요원이 출제, 채점, 문제선정,감시,문제편집,편찬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(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99쪽)
- 단재교육연수원등의 교육훈련기관의 연수와 관련한 시험관리예산은 모두 교관요원이 아닌 외래강사 또는 외부인사에게 계상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.

「표6」

##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계상현황

시험및고사명	출제 수당	채점 수당	문제 수당	감독 수당	편집 수당	기타
1. 일반직공무원시험		○				
2. 지방공무원특채시험		○				
3. 초등교육전문직임용시험 • 면접 • 컴퓨터실기 • 영어회화	○ ○ ○	○ ○ ○				
4. 초등교원 임용후보자	○	실기○ 면접○				• 업무추진비 100만원별도 • 여비429만원별도
5. 교감자격연수면접고사 • 면접 • 컴퓨터실기	○ ○	○ ○	○ ○	○	○	• 초등 및 중등 각각 계상
6. 중등교육전문직 임용 • 영어과 면접 • 컴퓨터실기 • 면접	○ ○	○ ○ ○				
7. 중등교원임용후보자	○	○				• 수업실기출제및 채점수당별도 • 여비(14,135천원) 및 업무추진비 120만원별도

**(12) 야간지도수당**

- 예산편성지침상 일·숙직비의 편성단가는 1일 1인당 1만원인바
- 기숙사 생활지도교원 일·숙직수당을 1일 1인당 1만5천원씩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(사항설명서 124쪽)
- 농업계 공동실습소 야간지도수당(1일 1만5천원×1명×5일×25기)의 계상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.

**(13) 교육강사수당**

-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은 시간당 ①특별강사 10만원(초과5만원)②일반강사 7만원(초과3만원)③기타강사 5만원(초과2만원)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
- 초등교육 제7차 교육과정연수강사 31명에 대한 초빙 계획과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이하로 계상하거나 산출기초를 시간단위로 하지 않은 다음의 교육·연찬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•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연수(시간당 3만원)	
• ICT활용교육강사	(시간당 2만원)
• 산학겸임 교사강사	(시간당 2만3천원)
• 졸업생을 활용한 직업교육	(학교당 6명×2만3천원)
• 학생 1일 탐구교실강사	(시간당 2만3천원)
• 원어민 강사수당	(시간당 3만원)

**※ 지역교육청 강사수당 계상**

- 편성단가준수 : 교원정보화교육, ICT 활용강사수당(5만원)
- 기타 : 최저시간당 2만3천원~3만원 계상(편성단가 이하)

#### (14) 임차료

- 예산편성지침상 각종회의 및 행사를 위한 장소임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각종시험 및 교육은 각급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
- 교직원체육대회 경기장 임차료등(심판수당 480천원 별도)을 계상 요구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지
- 2001년도 임차료예산(9억,6,602만원)대비 5.7%를 증액한 10억 2,128만 1천원을 계상한 배경과
- 교육청 본청 임차료 요구예산 9억 9,260만원중
  - 원어민 교사 주택임차료 1억 5천만원
  -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임차료 7억 4,075만원과
  - 기타 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#### (15) 다음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
- 가. 교육여건개선 사업관련
  - 2001년도 도의회 승인 받은 지방채발행 상황
  - 명예퇴직, 기간제교사 및 전임강사활용과 교원충원계획
- 나. 컴퓨터,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, 신규구입과불용품처리 및 교단선진화 사업투자
- 다. 제7차 교육과정개발 및 시·도공동학습자료 개발
- 라. 국제행사(자매결연)(21백만원)
- 마. 대여장학금 출연(38억 9,960만원) 및 직원능력개발지원
- 바. 자연농과운영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차이  
(세출 1억 1,736만원)

사. 주요자산취득사업

- 승용, 승합차량 및 통학버스 확보계획(25대)
- 분청전화 및 OA시스템사업
- 책걸상 및 사물함확보계획(15억 2천만원)

아. 주요시설운영 및 보수

- (1) 전산실 확장 및 방재시스템(3000만원)
- (2) 분청시설 보수(11건 16억 5,206만원)
- (3) 수영장운영 및 기숙사내부시설
- (4) 테니스장이설(5000만원)
- (5) 교육과정 개편시설사업
- (6) 중앙도서관 보일러보수(5억 3,135만원)

자. 시설부대비(3억 7,296만원)산출기초

차. 중식대 지원사업

카.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교간 경기대회 및 직원  
체육대회 개최경비등

## **VII. 심사결과**

(계수조정 보고자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록의원)

### **1. 심사경위**

- 2001년 12월 14일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
세입세출예산(안)계수조정

### **2. 심사결과**

-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요구액  
8,868억 9,905만 4천원중 19억 740만 2천원을 삭감 전액  
예비비로 계상키로 가결
- 삭감내역 : 별첨과 같음

## **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※ 첨부 1.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(안)1부.

##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(안)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제출예산액	수정내역	
			증	감
합 계	886,899,054	886,899,054	1,907,402	1,907,402
유 치 원	3,860,427	3,860,427	0	0
초등학교	90,978,869	90,978,869	0	0
중 학 교	98,689,874	98,689,874	0	0
고등학교	85,576,256	85,597,256	0	21,000
특수학교	11,104,463	11,104,463	0	0
기타학교	63,792	63,792	0	0
평생교육	1,340,099	1,340,099	0	0
급여관리	497,081,711	497,081,711	0	0
복지.후생	54,134,814	54,134,814	0	0
교육위원회	333,011	333,011	0	0
선거관리	155,696	155,696	0	0
교 육 청	10,281,131	12,064,545	0	1,783,414
지역교육청	4,060,396	4,123,396	0	63,000
교육지원기관	3,243,605	3,243,605	0	0
지방채상환	15,426,000	15,465,988	0	39,988
제지출금	0	0	0	0
예 비 비	10,568,910	8,661,508	1,907,402	0

##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산안삭감내역

(단위:천원)

페이지	내 용	요구액	삭감액	조정액
51	사업추진업무추진비	46,300	5,000	41,300
93	미국현지어학 학생연수경비	105,000	21,000	84,000
103	한국교원노동조합 임차수수료	6,000	6,000	0
104	한국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	100,000	100,000	0
206	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	75,000	75,000	0
207	디지털전화기	68,750	68,750	0
212	전화회선 및 선로증설	12,500	12,500	0
	전세자금대출이자보전	19,237	19,237	0
	자녀결혼자금대출이자보전	9,427	9,427	0
	본관의벽 및 창호보수공사	1,260,500	1,260,500	0
274	지역교육청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	500,000	200,000	300,000
307	은행차입금이자	470,628	39,988	430,640
	무선어학교실	360,000	90,000	270,000
	계	3,033,342	1,907,402	1,125,940